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43호 2015. 11. 9. (월요일)

선	기	관	의	장
람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909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8
- 하동군 공고 제2015-919호 2015년 고객만족도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48

ਨੀ					
4					
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감사실 (055)880-2041, 행정2041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43호 2015. 11. 9. (월요일)

선	기	관	의	장
람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909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8
- 하동군 공고 제2015-919호 2015년 고객만족도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48

ਨੀ					
4					
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감사실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공고 제2015-908호

히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히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하 동 군 수

-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2. 제안이유
- O 하동 10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 설계 필요
- O 우리군의 자원 보존과 미래 먹거리 자원 발굴을 반영한 조직개편
- 3. 주요 골자
- 군의 행정사무 분장 조정으로 실과 분장사무 대강 개정(조례안 제3조)
- 하동 미래 준비 사무 신설 : 섬진강관리, 마을만들기, 축제, 120기동대
- 통상·세입·교류 사무 강화 : 통상, 수출지원, 세입, 체납관리 교류협력, 봉사단체
- 사무 재조정 조직 기능에 따른 실과명칭 변경 및 직제순서 조정
 - 직제순서 변경
 - · 당초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주민복지과,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산단조성과

(3)제 443호

- 변경 :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경제수산과, 주민행복과, 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정보과, 재정관리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민원허가과
- 실과의 사무분장 조정
 - ·재무과(평가)→민원정보과(부동산평가)
-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 대강 개정(조례안 제9조)
- 과 명칭 변경: 농촌사회과 → 농촌진흥과, 소득지원과 → 농업소득과
- 녹차 업무 이관 : 국제통상과 → 농업기술센터
-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사무 강화 : 신소득작물, 6차산업
- 실과소장 명칭 변경(규칙안 제3조)
- 기획감사실장 → 기획조정실장, 주민복지과장 → 주민행복과장
- 민원과장 → 민원정보과장, 재무과장 → 재정관리과장
- 도시건축과장 → 민원허가과장
- 실과소장의 사무분장 조정(규칙안 제4조의 별표 1)
- 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 및 장의 명칭 변경(규칙안 제8조)
- 농촌사회과장 → 농촌진흥과장
- 소득지원과장 → 농업소득과장
-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사무분장 조정(규칙안 제9조의 별표 2)
-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하동군(참조:행정과,전화055-880-2153, FAX 055-880-2159,e-mail:gabi1004@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4) 제 443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5. 10. 제 출 자 : 행정과장

1. 개정이유

- 하동 10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 설계 필요
- 우리군의 자원 보존과 미래 먹거리 자원 발굴을 반영한 조직개편

2. 주요내용

- 군의 행정사무 분장 조정으로 실과 분장사무 대강 개정(안 제3조)
 - 하동 미래 준비 사무 신설 : 섬진강관리, 마을만들기, 축제, 120기동대
 - 통상·세입·교류 사무 강화 : 통상, 수출지원, 세입, 체납관리 교류협력, 봉사단체
 - 사무 재조정 조직 기능에 따른 실과명칭 변경 및 직제순서 조정
 - 실과명칭 변경
 - · 기획감사실→기획조정실, 주민복지과→주민행복과, 민원과→민원정보과 재무과→재정관리과, 도시건축과→민원허가과,
 - 직제순서 변경
 - · 당초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주민복지과,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 보호과, 도시건축과, 산단조성과
 - ·변경 :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경제수산과, 주민행복과, 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정보과, 재정관리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민원허가과
 - 실과의 사무분장 조정
 - ・재무과(평가)→민원정보과(부동산평가)

하동군공보

(5) 제 443 호

-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 대강 개정(안 제9조)
- 과 명칭 변경 : 농촌사회과→농촌진흥과, 소득지원과→농업소득과
- 녹차 업무 이관 : 국제통상과 → 농업기술센터
-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사무 강화 : 신소득작물, 6차산업

3. 조치사항

- 경남도 사전협의 : 2015. 10. 23(정책기획관) 의견없음
- 입법예고 : 10. 26 ~ 11. 16
- 의원간담회 : 2015. 11. 03
-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제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주민복지과,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를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경제수산과, 주민행복과, 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정보과, 재정관리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민원허가과"로 한다.

제3조 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기획조정실

-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나. 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 다.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 마.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 바. 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실

- 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 나. 문화재에 관한 사항
- 다.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 라.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 마.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 바.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제 443 호

3. 경제수산과

- 가.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 나.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 라.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민행복과

- 가.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나. 장애인복지 및 자활 업무에 관한 사항
- 다. 노인복지 대책수립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 라.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 마.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주민생활지워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워에 관한 사항

5. 행정과

- 가. 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 나.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인구증대시책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 다.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 라.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마.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총괄과

- 가.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나.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 다.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 라.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원정보과

- 가.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나.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다.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라. 부동산관리 기획·조정 및 주택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 마. 120민원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정관리과

- 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 나.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 다. 세입에 관한 사항
- 라.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 마. 국·공유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

9. 산림녹지과

- 가.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 다. 산림토목에 관한 사항
-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 마. 가로수,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설교통과

- 가.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나.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다.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마.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제 443 호

11. 국제통상과

- 가. 농·특산물의 통상에 관한 사항
- 나. 농·특산물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 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라.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자원봉사단체·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보호과

- 가. 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 생태에 관한 사항
- 나. 대기. 폐수 배출 시설 관리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 다.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3. 민원허가과

- 가. 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 다. 건축행정 및 디자인(광고물)에 관한 사항
- 라. 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
- 마.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제9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 2.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 3.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 4.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 5. 농업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 6.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 7.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
- 8.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 9.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0. 농업의 신소득작물 개발과 친환경농자재 생산에 관한사항
- 11. 식량작물, 친환경농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2.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 13. 과수, 특용작물 산업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 14.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하동군군민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②「하동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 ③「하동군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④「하동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⑤「하동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⑥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 ⑦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11) 제 443 호

- ⑧「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 ⑨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 ①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제3조 제6항 중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을 "농촌진흥과 농업인력 담당주사"로 한다.
- ①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민원과"를 "민원정보과"로 한다.
- ① 「하동군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정보과장"으로 한다.
- ③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정보과장"으로 한다.
- ④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도시건축과장"을 "민원허가과장"으로 한다.
- ⑤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도시건축과 도시계획업무 담당주사"를 "민원허가과 도시계획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⑥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 ①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 ⑥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소득지원과"을 "농업소득과"로 한다.
- ⑨ 「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2의 내용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제12조의 내용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ゼ・ 十至・	र पाउँ
현 행	개 정 안
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u>기획감사실,</u> 문화관광실,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주 민복지과,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산림	제3조(실·과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u>기획조정실</u> , 문화관광실, 경제수산과, 주민행복과, 행 정과, 안전총괄과, 민원정보과, 재정관리 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 과, 환경보호과, 민원허가과를 둔다.
제3조(실·과의 설치)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실·과의 설치)②(현행과 같음)
1. 기획감사실	1. <u>기획조정실</u>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다.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u>다.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u>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마. 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u>마.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u>
바. 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바. 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실	2. 문화관광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라.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u>마.</u>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u>마.</u>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u>바.</u>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총괄과	<u>6.</u> 안전총괄과
가. (생략)	가.(현행과 같음)
나. 만방위방대책및120만원기동대에관한사항	나.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제수산과	<u>3.</u> 경제수산과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 주민복지과	4. 주민행복과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시항	나. 장애인복지 및 자활 업무에 관한 사항
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다. 노인복지 대책수립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복지 및 자활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u>마.</u> 노인복지 대책수립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u>마.</u>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u>바.</u>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시항
6. 행정과 가. ~ 나. (생 략) <u>다.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u> 라. (생 략) <u>마.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u>	5. 행정과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라. (현행과 같음) 마.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원과 가. ~ 다. (생 략)	7. <u>민원정보과</u>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부동산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라. 부동산관리 기획·조정 및 주택 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이 관>	<u>마. 120민원 기동대에 관한 사항</u>
8. 재무과 가. ~ 나. (생 략) <mark>다. 주택 특성조사에 관항 사항 <삭제></mark> 라. 세입 및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마. (생 략)	8. <u>재정관리과</u>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세입에 관한 사항 라.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마. (현행과 같음)
9. 산림녹지과 가. ~ 마. (생 략)	9. 산림녹지과 가. ~ 마. (현행과 같음)
10. 건설교통과 가. ~ 다. (생 략) 라.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건설교통과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마.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1. 국제통상과	11. 국제통상과
가. 농·특산물의 통상유통에 관한 사항	<u>가. 농·특산물의 통상에 관한 사항</u>
나.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나. 농·특산물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다.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자원봉사 단체·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u>다.</u>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라 하동 녹차시업 육성 및 유통자원에 관항 사항<수제>	라.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자원봉사단체·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보호과	12. 환경보호과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13. 도시건축과	13. 민원허가과
D. 고기선국의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다. 건축디자인(광고물)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라.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라. 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
마. (생략)	마. (현행과 같음)
제9조(소관사무)(생략)	제9조(소관사무)(현행과 같음)
1. 농업정책, 농업인 지원 및 농가경영	1.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2. 부농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3.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u> 관한 사항</u>	4.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3.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5. 농업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4.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6.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교육 및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7.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
6.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8.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7.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9.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업의 신소득작물 개발과 친환경농
9. 친환경농업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자재 생산에 관한사항
시행에 관한 사항_	11. 식량작물, 친환경농업 계획 수립 및
10. 양정 및 농산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에 관한 사항_
11. 향토산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2.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3. 과수, 특용작물 산업육성 및 기술보급에
13. 과수, 특용작물 산업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14.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5. 10. 제출자: 행정과장

1. 개정이유

- 하동 10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 설계 필요
- 우리군의 자원 보존과 미래 먹거리 자원 발굴을 반영한 조직개편

2. 주요내용

- 실과소장 명칭 변경(안 제3조)
 - 기획감사실장 → 기획조정실장, 주민복지과장 → 주민행복과장
 - 민원과장 → 민원정보과장, 재무과장 →재정관리과장
 - 도시건축과장 → 민원허가과장
- 실과소장의 사무분장 조정(안 제4조의 별표 1)
- 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 및 장의 명칭 변경(안 제8조)
 - 농촌사회과장 → 농촌진흥과장
 - 소득지원과장 → 농업소득과장
-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사무분장 조정(안 제9조의 별표 2)

3. 조치사항

- 입법예고 : 10 ~ 11월중
- 의원간담회 : 2015. 11. 03
-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제외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실장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주민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무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국제통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하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정사무관으로, 한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민원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단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의 본문 중 "농촌사회과"를 "농촌진흥과"로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한다.

제8조 제2항의 본문 중 "농촌사회과장"를 농촌진흥과장"로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 득과장"으로 한다.

별표 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 ①「하동군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②「하동군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③「하동군자체감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④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부칙 제2조1항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부칙 제2조2항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 ⑤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민원과"를 "민원정보과"로 한다.
- ⑥「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1조 및 제18조 및 제19조 및 제22조 및 제23조 및 제25조 및 제26조 및 제27조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1조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제47조 및 제48조 및 제49조 및 제59조 및 제68조 및 제69조의2 및 제70조 및 제74조 및 제77조 및 제89조 및 제93조 및 제120조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22조 및 제130조 및 제131조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 ⑦「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4조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 ⑧「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6조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 ⑨「하동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민원허가과장"으로 한다.

[별표 1]

417104		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71	문장사무 고려되비의 조합기회 표현 비교의 시합 기호 비행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각종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2	실과단소 업무의 기획 조정
	3	중장기 계획 및 조정
	4	군정업무 주요업무 확인평가
	5	군수공약 사항 및 지시사항 총괄관리
	6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상 시상
	7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8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9	외국인 정책 및 통계, 등록
	10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
	11	군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나	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기획	1	공모사업 총괄추진
조정실장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3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5	창조지역사업 신청 및 관리
	다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집행 결정
	4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설계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총괄추진
	5	전시 지방행정 동원계획 수립시행
	6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7	국고예산확보 및 보조금 관리 총괄
	8	지방기금 운영 총괄
	9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상환업무 총괄
	<u> </u>	

하 동 군 공 보

(19) 제 443 호

	Г					
실과명		분장사무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1	홍보 계획 수립				
	2	군정홍보 및 보도				
	3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 및 편찬				
	4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				
	5	전시 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마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2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기획	3	공무원 비위 예방대책과 비위조사·처리				
조정실장	4	주민 감사 청구제 운영				
	5	군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임명제도 운영				
	6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7	계약심사				
	바	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	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제·개정, 폐지				
	2	소송(국가, 행정, 민사)·행정심판·소청에 관한 사항				
	3	행정절차제도 운영				
	4	각종 규제의 개혁 및 관리				
	5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실과명		 분장사무
	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1	지방문화예술 진흥
	2	문화예술분야 지도 육성 및 관리
	3	문화원 운영 지도 감독
	4	전시문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 지원 및 인쇄소·출판사 관리
	6	공연장 등록 관리
	7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사업추진
	나	문화재에 관한 사항
	1	문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도
	3	국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사업
	5	천연기념물(동물)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
	다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1	관광개발 계획수립 및 시행
	2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	3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4	관광지 지정 및 개발
실장	라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1	야생차문화축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알프스하동재첩축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북천코스모스메밀꽃축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	하동군 홍보대사 운영 및 관리
	마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1	관광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안내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
	4	관광여행업, 관광숙박업 등록 및 관리
	5	관광상품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6	공동브랜드 관리
	바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
	4	삼성궁, 천제당 운영 및 관리
	5	지리산역사관 및 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6	최참판댁 운영 및 관리

(21) 제 443 호

실과명		분장사무
	가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대책
	2	시장개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실업자대책 및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4	공산품 품질관리 및 물가관리
	5	지식재산권 업무
	6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에너지 수급 종합계획 수립
	2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및 세부계획 수립
	3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술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 수립
	4	승강기 및 계량기 업무
	5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관련 업무
	6	전원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다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1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기업활동 규제 완화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경제수산	5	공장설립 승인, 등록, 변경, 창업승인 및 사후관리
과장	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10	라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	해양관광개발 사업 및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가어항 및 다기능 어항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가마리나 개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유수면(해면) 관리에 관한 업무
	5	수산행정 업무의 기획조정 및 총괄
	6	어촌종합개발사업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무
	7	연안정비 사업 계획 수립 및 연안오염 방지시설 사업
	8	어항시설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9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어촌환경 개선
	<u> </u>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1	어정이용 개월계획 우립 해면어업 면허 및 관리
	3	에면서입 면서 및 관리 수산증식사업 및 사후관리
	4	구선등식사업 및 사우관디 어업 피해예방 및 보상
	5	어렵 피애에당 및 보장 어선등록 및 관리
		어선등속 및 선디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7	대부인 어디에 원인 사용 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예방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9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ا ا	어디세마마리 ㅗㅇ ㅊ 단니에 단단 개호

실과명		분장사무
	가	기초생활 보장지원 및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평가
	2	기초생활보장지원업무 계획 수립 추진
	3	생업·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관리
	4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관리 및 지원
	5	지역사업의 개발·관리 시행
	6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7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8	종합사회복지관 총괄 및 시설관리
	나	장애인복지, 자활 업무에 관한 사항
	1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2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4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5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6	장애인바우처 지원 사업
	7	자활프로그램 및 자활후견기관 관리
- - - 주민행복	8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과장	9	사랑나누미 빨래방 운영
40	다	노인복지 대책수립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1	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2	노인소득보장 및 취업기회 확충
	3	묘지설치 허가 및 분묘의 개장신고
	4	사랑의 주택 관리 및 실버식당 운영
	5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경로당 관리
	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7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관리 운영
	8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라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1	여성정책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
	2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및 지원
	3 4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대회 관련사항 여성폭력예방 및 방지사업 추진
	_ 5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6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지원 및 관리
	7	가족지원 및 건강가정지원 업무
	8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
	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하 동 군 공 보

(23) 제 443 호

실과명		분장사무
	마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선정, 자격관리, 근로능력판정에 관한사항 추진
	2	복지대상자 각 사업팀 보장 결정 요청
	3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4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관리 및 특별회계 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5	차상위 계층 및 사회취약 계층 지원 업무
	6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
주민행복	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과장	1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2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관리
	3	공공·민간기관 서비스연계 체계구축
	4	방문형 서비스사업 협력체계 구축 운영
	5	129희망콜(보건복지)센터 업무
	6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리
	7	불우이웃돕기(공동모금회 연계), 후원·결연 업무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과명		분장사무
	가	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교육
	2	호봉승급 및 호봉 재 획정
	3	공무원시험, 인사위원회 운영
	4	여론, 의전관리
	5	집단민원 총괄관리 및 행정구역 개편조정
	6	전시 주민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7	읍면 기능전환 계획수립 및 시행
	8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직제관리
	9	국가기반체계 보호
	10	전국 및 경남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업무
	11	일제강점하 및 과거사 진상규명
	나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인구증대시책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1	복무, 보안, 공인관리
	2	주민자치,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 선거관련 업무
	3	정부3.0업무
행정과장	4	적십자회비 모금
0040	5	직장동호회 운영
	6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7	사무위임 및 전결규정에 관한 사항
	8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0	직장금고 운영
	다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1	청소년 육성계획 및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민간청소년 수련시설 허가,등록 및 지도
	4	청소년 자립대책 및 모범청소년 발굴 포상
	5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6	청소년 보호법 관련 사무 추진
	7	요보호아동 후원자 결연사업 지도관리
	8	결식아동 보호지원
	9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원 및 관리
	10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

(25) 제 443 호

실과명	분장사무	
	라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	범 군민 교육대책 운영
	2	초·중·고등 교육기관의 지원 활성화
	3	인재육성 장학재단
	4	특수대학(분교) 설립 육성
	5	교육환경 및 교육개발 기반개선
	6	평생학습관 설립 운영
	7	학교 기숙사·학원 설립 지원
ᆌᅯ거ᅚ	마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과장	1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
	2	군민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정보 활성화 대책 추진
	3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운영
	4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주요서버 도입 및 운영
	5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및 운영
	6	회의실 방송장비 총괄 관리
	7	새올행정시스템 구축 운영
	8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 및 운영
	9	IP전화시스템 관리 및 운영

실과명		분장사무
		안전·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	안전총괄·안전문화, 사회안전 업무
	2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관리
	3	특별사업경찰 업무 지원
	4	각종 재난상황 관리(보고 및 초동대응)
	5	안전·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운영
	6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나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2	비상대비 대책수립 업무
	3	전시 병력동원업무 지원
	4	예비군 육성 지원
	5	사회복무요원 관리
	다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1	지역방재 계획 수립
	2	자연재난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
안전총괄	3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추진
과장	4	재해위험지 조사 및 방재시설물 점검 및 관리
	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	재해 사전대비 업무
	7	풍수해 보험 업무
	라	하천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하천 정비·유지관리
	2	기성제 정비 및 하도개선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4	골재 채취업 등록 및 관리
	5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6	공유수면(국토부)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항
	마	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섬진강 관련 업무 관리
	2	섬진강 인접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3	국가하천구역 편입 토지 보상
	4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관리
	5	국가하천 수변공원(4대강 사업구간) 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가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	민원안내 및 상담
	2	여권업무 및 민원행정시책 추진
	3	민원 서비스 혁신(G4C)운영
	4	민원(신고, 인·허가 등)접수 통제
	5	하동군민원조정위원회 관리
	6	고객만족도설문조사
	7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
	8	행정정보 공개운영 및 군정기록물 관리
	9	행정정보공동이용
	나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 및 운영
	1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지적 관리 기획 및 조정
민원	3	지적 측량 검사
^{한견} 정보과장	4	KLIS 구축사업 기획·조정 업무
	5	도곽접합 등 도면 정비
	6	정밀한 연속도면 제작 추진
	7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권한부여 등 관리
	8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9	토지등록사항정정 관련 업무
	10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 공부정리
	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1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 사업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
	4	지리정보신규사업 타당성 및 연계성 검토 총괄
	5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6	타 정보화사업과 GIS연계업무및 통합 D/B 지원
	7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실과명		분장사무
	라	부동산관리 기획·조정 및 주택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	개별필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및 검증 업무
	2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	부동산 실거래 업무
	5	새주소 도로명 부여 및 관리
	6	공간정보사업
	7	토지거래허가 업무
민원	8	개별주택 가격조사 계획수립
정보과장	9	표준주택 가격에 관한 업무
	마	120민원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1	120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2	120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3	가로등(보안등) 설치(단, 도로개설시 제외)
	4	가로등(보안등) 개보수 및 유지관리
	5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6	가로등(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 사항 처리
	7	가로등(보안등) 수리용 차량 운영

(29) 제 443 호

실과명		분장사무
	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	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대책 추진
	2	지방세 부과 및 과세결정
	3	은닉세원 조사 및 발굴
	4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5	지방세 구제업무
	6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7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건축물, 선박·항공기) 부과
	8	지방세 세무조사 및 기타 지방세 부과
	나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1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2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3	공사 용역 계약 및 기타 계약관리
	4	공무원 급여 및 원천징수
	다	세입에 관한 사항
	1	세외수입 관리
	2	자금운용 및 자금배정
	3	국도비 및 보조금관리
	4	금고관리 및 수납대행점 관리
	5	수입증지 관리
재정	6	세입 과오납금 환부처리
	7	기부금품 모집 및 심의처리
관리과장	8	세입징수보고 및 세입결산
	9	세외수입원 발굴 등 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
	10	기타 지방세입 수납업무에 관한 사항
	11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라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1	지방세 및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정리 및 보고
	2	지방세 및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자동차등 과태료 체납 포함)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4	경매 및 공매관리
	5	부동산 · 예금 · 채권 압류
	6	행정규제(관허사업 제한, 고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기타 행정규제)
	7	자동차 번호판 영치
	8	법원 경매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마	국·공유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
	1	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재물조사 실시
	2	청사·관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지도
	3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업무지도 감독
	4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 잡종재산 관리
	5	도.군유 잡종재산 관리
	6	관용차량 관리
	7	물품출납, 보관 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240	가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림조성 종합기획
	2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임업단체 육성 및 지도관리
	4	산림분야 종묘업 등록업무
	5	산림분야 공모사업
	6	농림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7	임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지도감독
	8	공유림 관리에 관한 업무
	나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	산불방지 종합대책
	2	입목벌채 허가, 신고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예찰
	4	숲 가꾸기 사업
	5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6	임산물 굴·채취 허가 및 신고
	7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8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및 시행
산림녹지	다	산림토목에 관한 사항
과장	1	산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산림입지 조사
	3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4	산림재해대책 및 복구
	5	임도시설 및 관리
	6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
	7	보안림 지정 및 관리
	라_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1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2	수목원, 생태숲 조성 및 관리
	3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
	4 마	산촌생태마을 조정 및 관리 가로수,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u></u>	공원조성 및 관리 공원 및 관리에 관원 사용
	2	가로수 조성 및 관리
	3	자연공원(국립공원) 관련업무 전반
	4	도로변 꽃길 꽃동산 조성 및 관리
	 5	
	6	학교숲 조성 업무

(31) 제 443 호

실과명		분장사무
	가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도로교통량 조사
	2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5	도서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6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용도 폐지
	7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관리
	8	지하수 개발이용 인허가
	9	국도, 지방도사업, 소규모사업 보상관련업무 일체
	나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	농업기반 조성 종합 기획·조정
	2	경지정리 사업
	3	농업용수 개발
	4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건설교통	5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기 선물보증 기 과장	6	농지개량사업 시행 인가
ДО	7	정주권개발사업
	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	받기반조성사업
	10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다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및 정비
	2	도로공사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3	접도구역 관리
	4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단속
	5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6	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7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9	도로 설해대책
	10	관내 도로 교량관리
	11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관련업무 일체

	T	7
실과명		분장사무
	라	마을만들기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통합,선도,일반)
	2	권역단위 및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3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4	신규마을조성사업
	5	시군 창의사업
	6	특색있는 마을만들기사업
건설	7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8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교통과장	마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교통행정 종합기획·조정
	2	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등록 및 지도감독
	3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지도감독
	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6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실과명		분장사무
	가	농·특산물의 통상에 관한 사항
	1	농산물 국내유통 관련 전반
	2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3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4	농특산물의 쇼핑몰 및 각종 판매장 운영관리
	5	특산물의 마케팅 지원
	나	농·특산물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1	농·특산물 수출관련 전반
	2	수출확대 종합계획 수립
	3	해외시장 개척 활동 및 홍보
	4	수출전문업체 및 국내외 바이어 육성관리
	5	수출농단 및 관련시설 지원관리
	6	수출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
	7	수출홍보 마케팅 지원
	다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	외자 및 국내 기업유치 활동
	2	투자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국제통상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 운영 지원
과장	4	투자유치 타깃기업 관리
	5	개발 투자자 발굴 및 유치
-	라	자매결연, 대외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	자매결연, 국·내외교류업무 총괄
	2	국제교류업무 계획 및 개발
	3	국제 자매우호도시 관리
	4	국제파견 연수공무원 관리 및 지원
	5	국내자매도시 관리 및 교류협력사업
	아	자원봉사단체, 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1	사회봉사단체 관리 총괄
	2	사회봉사단체 보조금 지급 및 관리
	3	자원봉사활동 개발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 활성화 교육연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우대시책 발굴 및 추진
	6 7	자원봉사종합센터 관리 및 사업지원
	-	다건당사당합센터 펀디 및 사업시전 읍면 복지회관 관리
	8	가로기 관리
	9 10	가도기 펀디 주민소득 지원관리
	10	구근또ㅋ 시전한다

실과명		 분장사무
	가	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수립, 기후변화, 생태에 관한 사항
-	1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	3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관련업무
-	4	수변구역 관리 및 행위허가, 협의 업무
-	5	일반 및 직접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
	6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
-	7	개발관련 오염총량 협의 및 부하량 관리
-	8	토양오염 유발시설 인허가 및 관리
-	9	기후변화 대응 관련업무
	10	탄소포인트제 시행 및 평가
	11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원
-	12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업무
	13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	14	녹색시범마을 육성 지원
	나	대기·폐수배출시설 관리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1	환경오염 근절대책 추진
	2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관리
환경보호	3	환경오염피해 발생 조정관련 업무
	4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과장	5	생활, 건설 소음진동 규제관련 업무
	6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 추진
	7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특정시설 설치신고
	8	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
	9	대기환경 규제 지역 지정 및 관리업무
	다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추진
_	2	생활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지도단속
-	3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소 지도단속
_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사후관리
-	5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및 운영관리
	6	공중화장실 총괄 관리
	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전반
	2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
	3	소각시설 가동 및 유지관리
	4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5	매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6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35) 제 443 호

실과명		분장사무
민원 허가과장	가	도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온천에 관한 사항
	1	군 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
	2	도시계획 입안 시행
	3	시가지 및 도시구획 정리
	4	군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5	도시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6	택지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7	경전선 철도이설
	8	광역권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9	개발촉진지구 지정
	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1	군 계획시설 개설계획 수립 및 편입부지 보상
	2	군 계획시설 개설공사 시행 및 감독
	3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4	소도읍 육성 업무 및 섬진강체육공원 조성
	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다	건축 디자인(광고물) 및 행정에 관한 사항
	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빈집 정비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3	위법건축물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4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관리
	5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
	6	재해주택 관리
	7	주거복지(급여)에 관한 사항
	8	광고물 등 허가·신고 및 지도 감독
	9	경관개선사업 추진
	10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라	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
	1	건축신고 및 허가업무
	2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업무
	3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
	4	건축물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
	5	건축물 대장정비 사업추진
	6	분양대상 건축물 분양승인
	마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1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2	농지전용허가·협의·변경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3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4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준공 후 수질검사

실과명		분장사무								
	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총괄 기획·조정								
	2	남해안시대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3	남해안시대 관련 자료 수집 및 홍보물 제작								
	4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동향관리 및 개별법 관련 업무 추진								
	5	선벨트 남중권 프로젝트 기획 조정								
	6	남해안시대 관련 해양개발사업 추진								
	7	해양레저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								
	1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추진								
	2	대송산업단지조성 및 사후관리								
	3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운영 및 관리								
	4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시설(내부간선도로, 공업용수, 폐수) 사업 추진								
 산단조성	5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조성 및 관리								
근근포	다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四0	1	신도시 개발지구 지정								
	2	갈사만 배후도시 개발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7	공업지구 내 공장 설립 등에 관한 사항								
	8	두우배후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9	금성조선농공단지 및 사후관리								
	라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보상에 관한 사항								
	1	경제자유구역개발 보상 업무 추진								
	2	공공용지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3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보상민원 해결								
	4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업무 추진								

[별표 2]

하	동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9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실 과명 보건소장	가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1 공중보건의사 배치・복무 관리 2 보건지소 · 진료소 운영 및 지도 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5 농여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6 보건지소 의약품 및 각종 기자재 구매업무 7 보건사업 업무기획 및 조정 8 의료반 운영 및 각종의료지원 업무 9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건강진단 등 신고 나 예방의약에 관한 사항 1 소독의무대상시설관리 2 의료기관 등 지도 관리 방역소독 사업 3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4 마약류 지도·관리 5 한센병 등록환자 관리 6 예방점증 사업 및 결핵 관리 7 신종전염병 발생시 대책상황실 운영 8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및 각종 전염병 관리 웹 보고 9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10 결핵관리 11 장기이식 등록 관리 12 기생충퇴치사업 13 성병, 에이즈 등 관리 14 해하수 관리 12 건강조원사업 2 회귀・난치성질환자 관리 및 지원 3 국가암 조기검진 4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업 5 지역사회 건강조사 6
l I	11 출산장려시책 지원

실과명		분장사무									
	라	방문보건에 관한 사항									
	1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영양,운동,비만,절주)									
	2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진료 및 전담인력관리)									
	3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연계사업									
	4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5	만성질환관리사업(고혈압,당뇨,고지혈증)									
	6	금연사업(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7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8	모자보건사업									
	9	재가장애인 등록 및 재활치료									
	10	경로당 방문진료									
	11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2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13	치매관리사업									
	14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15	노인의치보철사업									
보건소장	마	진료에 관한 사항									
	1	건강검진 업무									
	2	민원 제증명 발급, 수입금 관리 등 민원실 운영									
	3	성병,에이즈 등 각종 검사관리									
	4	건강검진, 민원 병리검사 관리									
	5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 등									
	6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7	특수의료장비 관리									
	8	의료보험보호 청구 업무									
	바	공중이용시설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	식품영업(신고·허가)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업소 개설업무									
	3	위생지도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4	무허가업소 지도단속									
	5	국민건강 위해식품 단속									
	6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리									
	7	식품·공중위생 교육·홍보									

실과명		분장사무								
	가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센터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FTA 대책 및 지원사업								
	4	농촌특산단지 및 농업법인 육성지도								
	5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지방혁신계획수립 및 추진								
	7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나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1	양곡 수급관리								
	2	농업재해 조사 및 복구 지원사업								
	3	식량작물(쌀, 밭농업) 직불금 지원								
	4	농어촌 진흥기금 관리 운영								
	5	경관보전 직불제								
	6	친환경농업 직불제								
	7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농축산	8	농업인융자이전보조금지원사업								
과장	9	농작물 재해보험 관리								
	다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	한우산업 육성								
	2	낙농산업 육성								
	3	양계산업 육성								
	4	양돈산업 육성								
	5	양봉,토봉산업 육성								
	6	기타 가축 육성								
	7	축산물 브랜드 육성								
	라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1	가축방역 및 약품지원 사업								
	2	가축 질병예찰 및 병성감정								
	3	공수의 지도 감독								
	4	공동방제단 운영								
	5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								
	6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및 보상								
	7	축산환경개선								

실과명											
	가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									
	2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도									
	3	귀농인 관리 및 지도									
	4	농업인 품목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									
	5	농민회 육성 지도									
	6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7	농업인 교육 훈련									
	8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조직관리									
	9	농업경영 개선지도									
	10	농업인 정보화 촉진 사업									
	나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1	농촌체험관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3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관리지도									
_	4	팜스테이 마을 육성 및 관리 지도									
	5	농산물 및 소규모 마을축제									
	6	농가민박 육성 및 관리									
	7	마을 가꾸기 사업									
-	다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									
L 2	1	향토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									
농촌	2	벤처농업 육성									
진흥과장	3	농·특산물의 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									
	4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개발 및 지원									
	5	농업인 기술개발 사업									
-	6	농업경영 개선지도									
	7	농업인 정보화 촉진 사업									
-	라_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1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2	농작업환경개선 및 편이장비 보급									
-	3	생활문화전승 및 기술지원									
-	4	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 육성									
	5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도									
-	6	생활개선회 육성 및 관리									
	7	농촌여성 활력 증진교육 									
	<u>8</u> 9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관리 향토음식 개발 및 보급									
	 마	영도금역 개발 및 포립 <mark>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mark>									
	1 1	동합기계와 독선 및 편디에 편한 사용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									
	2	동기계 문의 누니한 문항 농업기계 사후봉사 업체관리									
	3	중합기계 사무용사 합세된다 농업기계화 촉진 및 실수요자 교육									
	4	중립기계와 독선 및 필구표자 교육 농업 기계화사업									
	<u>4</u> 5	중합 기계와사합 농기계 보관 창고 관리									
	6	동기계 보편 정보 된다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u> </u>	이러기계 네뗏ㄷㅎ 콘시 ᆫㅇ									

(41) 제 443 호

실과명		분장사무
	가	농업의 신소득작물 개발과 친환경농자재 생산에 관한사항
	1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관리
	2	친환경농업단지 및 생태농업단지 조성
	3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및 친환경인증 활성화
-	5	과학영농시설 운영
	6	지역농업개발센터 종합운영
	7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실증시범 사업
	나	식량작물, 친환경농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식량생산 종합계획 수립
	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
	3	고품질 쌀 생산 및 기술지도
	4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 및 종자업 등록
	5	농약 안전 사용 및 현장기술 지도
	6	토양·식물체·관개수 등 환경농업 실태조사 및 분석
	다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	채소·화훼 종합계획 및 생산
농업소득	2	수출전략 작목 개발 및 농가보급
과장	3	채소 지역 특화품목 육성·지도
	4	시설채소·노지채소 신기술 보급지도
	5	채소 및 화훼분야 소득작목 개발
	6	시설채소 육성 및 지원사업
	7	채소 농약 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
	라	과수, 특용작물 산업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	과수·특용작물 종합계획 수립 및 생산
	2	FTA대응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3	과수·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4	버섯재배 및 시범사업 추진지도
_	5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6	잠업 기술 지도
	마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	하동 녹차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2	공동 포장재 지원사업 및 품질개선 등 경상사업
	3	녹차산업의 부가가치 증대계획 수립 시행
	4	녹차연구소 관련 업무·사업 지원 및 점검
	5	차 문화센터 관리운영

신・구조문 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조(실·과·장의 직급)<u>기획감사실장은</u> 제3조(실·과·장의 직급)기획조정실장은 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 보하고, 문화관광실장은 지방서기관, 지고, 문화관광실장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 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의 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수 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수산과 수산사무관으로, 주민행복과장은 지방행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 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산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 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의 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 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사무관으로, 민원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 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 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 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사무관으로, 재무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 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림녹 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 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 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교 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 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국제통 로, 국제통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 업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 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도 민원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 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단조성과장은 지방행 방시설사무관으로, 산단조성과장은 지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다.

혅

신 · 구조문 대비표

제8조(하부조직)① 군 농업기술센터 제8조(하부조직)① 군 농업기술센터의 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축산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축산과, 농촌진 농촌사회과 및 소득지원과를 둔다. 흥과 및 농업소득과를 둔다.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②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 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지방 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지방농촌 농촌지도관으로, 농촌사회과장은 지방지도관으로, 농촌진흥과장은 지방농업 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u>소</u>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u>농업소득</u> 득지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 지도관으로 보한다.

개 정

아

하동군 공고 제2015-909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하 동 군 수

-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2. 제안 이유
- O 2015년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확충(순증)
 - 담당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 섬진강관리, 마을만들기, 축제, 120기동대, 수출지원, 체납관리
- 3. 주요 골자
- 군의 정원 총수를 640명(증 6명)으로 조정 (조례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634명→640명(증 6명)
-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 조정(조례안 제4조의 별표3)
 - 총계 634명→640명(증 6명)
 - 일반직 계 603명→609명(증 6명)
 - 6급 이하 565명→571명(증 6명)

(45)제 443호

- O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규칙안 제2조의 별표)
 - 문화관광실 : 행정 9급 증2명
 - 경제수산과 : 행정 9급 증1명
 - 행 정 과 : 운전 6급 △1명, 운전 7급 증1명
 - 안전총괄과 : 행정·시설·6급 △1명, 행정·시설·환경·6급 증1명, 행정·해양수산·시설·8급 증1명

행정·시설 8급 △1명, 행정·환경·시설 9급 증1명

- 민원정보과 : 운전 6급 증 1명, 행정·공업 9급 증 1명
- 재정관리과 : 운전 7급 △1명
- 건설교통과 : 행정·시설 9급 증 2명
- 국제통상과 : 행정·농업 6급 △1명, 행정·농업 7급 증 1명

행정·농업 9급 △1명

- 의회사무과 : 속기 6급 증 1명, 속기 7급 △1명
-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하동군(참조:행정과,전화055-880-2153, FAX 055-880-2159,e-mail:gabi1004@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출연월일 : 2015. 10. . 번호 제 출 자 : 행정과장

1. 개정이유

- O 2015년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확충(순증)
 - 담당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 섬진강관리 미을민들기 축제 120가동대 수출지원 체납관리

2. 주요내용

- O 군의 정원 총수를 640명(증 6명)으로 조정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634명→640명(증 6명)
-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의 별표3)
 - 총계 634명→640명(증 6명)
 - 일반직 계 603명→609명(증 6명)
 - 6급 이하 565명→571명(증 6명)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당초예산편성시 반영계획

나. 합 의:기획감사실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10 ~ 11월중

나) 예고방법 : 하동군 공보, 홈페이지, 읍 • 면 게시판 등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 : 붙임참조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제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34명"을 "6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21명"을 "62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의회	직속	기관			
지원 필 직급별	총계	본청	사무과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사업소	입	면
총 계	<u>640</u>	_						
정무직 계	1	_						
군수	1	1						
일반직 계	<u>609</u>	_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u>571</u>	_						
별정직 계	3	_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_						
연구직 계	2	_						
연구관	-							
연구사	2	_						
지도직 계	25	_						
지도관	-							
지도사	25	_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7	H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3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 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21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640명 1:: 627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회 사무 과	직 보 건 소	속기관 농업 기술 센터	사 업 소	아버	면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회 사무 과		속기관 농업 기술 센터	사 업소	아	면
총 계	634	-							총 계	<u>640</u>	-						
정무직 계	1	-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603	-							일반직 계	<u>609</u>	-						
4급	1	1							4급	1	1						
4급~5급	3	2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65	_							6급 이하 계	<u>571</u>	-						
별정직 계	3	_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_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_							연구직 계	2	-						
연구관	ı								연구관	ı							
연구사	연구사 2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_							지도직 계	25	_						
지도관	-								지도관	-							
지도사	25	_							지도사	25	_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총 정원 6명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담당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 섬진강관리, 마을만들기, 축제, 120가동대, 수출지원, 체납관리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5년간) -----금 935,600천원
 - 충원(6명) 인건비(자체)
- 나. 추계의 결과
 - 충원(6명)

(단위: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세출	인건비	180,000	183,600	187,000	191,000	194,000	935,600
세입	자체예산	180,000	183,600	187,000	191,000	194,000	935,600

※9급 03호봉 연평균 인건비기준 : 30,000천원

※연도별 평균 봉급 인상분 2.0%추가 적용

- 3. 부대의견
- 문화관광, 국제통상, 농업분야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충원
- 4. 작성자 : 행정과장 김재권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천원)

_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T &	五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입게
재원조달		180,000	183,600	187,000	191,000	194,000	935,600
T1 711	소계	180,000	183,600	187,000	191,000	194,000	935,600
자체 수입	지방세	180,000	183,600	187,000	191,000	194,000	935,600
T 🗓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부	기타 '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체충원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로 충원

3. 부대의견

○ 문화관광, 국제통상, 농업분야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충원

4. 협의사항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5. 작 성 자 : 행정과장 김재권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출연월일 : 2015. 10. . 번호 제 출 자 : 행정과장

1. 개정이유

- O 2015년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확충(순증)
 - 담당신설에 따른 인력 6명 증원 : 섬진강관리, 마을만들기, 축제, 120가동대, 수출지원, 체납관리

2. 주요내용

- O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안 제2조의 별표)
 - 문화관광실 : 행정 9급 증2명
 - 경제수산과 : 행정 9급 증1명
 - 행 정 과 : 운전 6급 △1명, 운전 7급 증1명
 - 안전총괄과 : 행정·시설 6급 △1명, 행정·시설·환경 6급 증1명, 행정·해양수산시설 8급 증1명
 - 행정·시설 8급 △1명, 행정·환경·시설 9급 증1명
 - 민원정보과 : 운전 6급 증 1명, 행정·공업 9급 증 1명
 - 재정관리과 : 운전 7급 △1명
 - 건설교통과 : 행정·시설 9급 증 2명
 - 국제통상과 : 행정·농업 6급 △1명, 행정·농업 7급 증 1명
 - 행정·농업 9급 △1명
 - 의회사무과 : 속기 6급 증 1명, 속기 7급 △1명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계획

나. 합 의: 기획감사실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10 ~ 11월중

나) 예고방법 : 하동군 공보, 홈페이지, 읍 • 면 게시판 등

다) 제출의견 :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제외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7 11	기관별	n	นะเ	직설	F기관	사약	ద 보소	의 회	^	43
구분	직급별	합계	본청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시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총 계	<u>640</u>	<u>286</u>	68	49	9	23	13	21	171
정무	정무직 계	1	1							
10 T	정무직	1	1							
	일반직 계	<u>609</u>	<u>282</u>	68	24	9	23	11	21	171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시설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일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	5	1							4
 반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시설	4	3			1				
	행정·해양수산	1	1							
직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	기관별			직숙	학기관	사 약	법 소	의 히		
구분	직급별	합계	본청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사 역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사무과	1 1 1 1	면
	6급 소계	<u>158</u>	<u>80</u>	12	7	2	3	<u>3</u>	7	44
	행정	13	12	1						
	세무	1	1							
	속기	<u>1</u>						<u>1</u>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7	7							
	운전	4	2					1	1	
	행정·세무	12	5						1	6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u>28</u>	<u>9</u>		3			1	1	14
	행정·녹지	3								3
	행정·환경	2	2							
	<u>행정·시설</u>	<u>14</u>	<u>13</u>							1
일	전산·방송통신	1	1							
_	농업·녹지	3	2		1					
	농업·수의	1			1					
반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직	행정·세무·농업	4	2		0					2
4	행정·세무·시설	3	2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4				1				3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시설·환경	<u>2</u>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사무운영	2	L						1	1

하 동 군 공 보

(57) 제 443 호

	기관별			직숙	속기관	사	 검소	A) 중)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생하수도 사업소	사무과	윺	면
	7급 소계	182	<u>82</u>	19	7	3	5	4	9	53
	행정	22	15			1		3	1	2
	세무	2	2							
	전산	2	2							
	사회복지	8	2						1	5
	속기	1						1		
	공업	3	2				1	<u>±</u>		
	농업				1		1			
		1			1					
	녹지	2	2							
	해양수산	4	4				_			
	시설 의료기술	15	8	4			2		1	4
	의료기술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운전	11	2	2					2	5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5	4							1
일	행정·공업	3	2		1					
	<u>행정·농업</u>	<u>18</u>	<u>5</u>						2	11
	행정·시설 행정·환경	15 1	10			1				4
반	행정·환송통신	1	1							1
	공업·환경	1	1							1
1	농업·농촌지도사	2			2					
직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전산·농업 행정·전산·시설	3	2							1
	행정·농업·녹지	3	1 2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_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통신운영	1							1	
	사무운영	3					1			2

	기관별			직숙	· 수기관		 검소	의 힘		
구분	직급별	합계	본청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윱	면
	8급 소계	147	63	33	4	2		2	3	40
	행정	15	8					2		5
	세무	1	1							
	사회복지	6	2						1	3
	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2	2							
	보건	10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5		5						
	식품위생	1		1						
	환경	1	1							
	시설	9	5							4
일	시설관리	3	3							
	운전	7	1		1					5
반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직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13	5		1					7
	행정·해양수산·시설	<u>5</u>	<u>3</u>							2
	행정·시설	<u>4</u>	<u>3</u>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4	4							
	행정·보건·간호	4		4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보건·간호·의료	2		2						
	사무운영	1	1							

	기관별			직설	누기관	사	 업소	의 히	_	
구분	직급별 기단된	합계	본청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업소 상하수도사 업소	사무과	윺	면
	9급 소계	<u>84</u>	<u>42</u>	2	2	1	14		1	22
	행정	<u>8</u>	<u>7</u>				1			
	사회복지	17	7							10
	환경	2	2							
	공업 <u>·시설관리</u>	7					7			
	해양수산	1	1							
	보건	4					4			
	운전	3	1							2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6	2						1	3
일	행정·농업	<u>3</u>	<u>1</u>							2
	행정·시설	<u>13</u>	<u>12</u>			1				
반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2			2					
직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공업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환경·시설	2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화공운영	1					1			

	ਤੀ ਹੀ ਮੁੱਖ			직숙	속기관	ルギクロカ	시 최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상하수도사 업소	의 회 사무과	윱	면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별	행정·별정	1					1		
정 직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연구직 계	2	2						
구	학예연구사	1	1						
직	기록연구사	1	1						
지	지도직 계	25			25				
도 직	농촌지도사	25			25				

신・구조 대문비표

	현 				행							개	7	청 	Ç	<u>간</u>					
구분	기관별	합계	본청		기관 농업기술센터	사업 체육시설사업소	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숇	면	구분	기관별		본청	직속 보 건 소	기관 농업 기술센터	사업 체육시설사업소	소 상하수도사업소	의 회 사 무 과	읍	
	旁계	634	280	68	49	9	23	13	21	171		き계	<u>640</u>	<u>286</u>	68	49	9	23	13	21	,
정무	정무직 계 정무직	1	1								정무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603		68	24	9	23	11	21	171	78 97	정무직	1	1							
	4급 소계	1	1									일반직 계	<u>609</u>	<u>282</u>	68	24	9	23	11	21	
	서기관	1	1								İ	4급 소계	1	1							
	4~5급소계	3	2	1							ł	서기관	1	1							-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										-
	서기관·행정·시설사무관	1	1									4~5급소계	3	2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의료기술사 무관	1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무관											서기관·행정·시설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İ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1		1						-
	행정	3	2					1			İ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
	의무	1		1							ŀ	행정	3	2					1		-
	시설	1	1								ŀ	의무	1		1						-
	행정·사회복지	1	1									 시설	1	1							-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	행정·사회복지	1	1							-
	행정·농업	5	1							4	-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_
일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일	행정·농업	5	1							-
반	행정·시설	4	3			1					반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
-	행정·해양수산					-					킨			,			1				_
직		1	1								직	행정·시설	4	3			1				_
	행정·농업·녹지	2	1							1	-	행정·해양수산	1	1							-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_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	행정·농업·녹지·시설	1								_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_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행정·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u> </u>						1	1		행정·환경	1	1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_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Ī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Ī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Ì	농업·지도관	2			2					-

	<u></u>	<u>력</u>			ව්	}						기	}	정		ۇ	<u>}</u>				
				직설	가기관	사 역	실 소	۵۱							직속	가기관	사	결 소	0		
구분	기관별	합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화	숇	면	7·분	기관별	합계	본청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사무과	윱	면
	6급 소계	158	81	12	7	2	3	2	7	44		6급 소계	158	<u>80</u>	12	7	2	3	<u>3</u>	7	44
	행정	13	12	1							Ī	행정	13	12	1						
	세무	1	1								Ī	세무	1	1							
	녹지	1	1								-	속기	1						1		
	해양수산	1	1									녹지	1	1							
	보건진료	5		5							Ī	해양수산	1	1							
	환경	2	2								ľ	보건진료	5		5						
	시설	7	7									환경	2	2							
	운전	4	2					1	1			시설	7	7							
	행정·세무	12	5						1	6		운전	4	2					1	1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세무	12	5						1	6
	행정·공업	1			1						Ī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농업	29	10		3			1	1	14	Ī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3	10						-	3	-	행정·농업	28	9		3			1	1	14
	행정·환경	2	2								f	행정·녹지	3								3
	행정·시설	15	14							1	İ	행정·환경	2	2							
	전산·방송통신	1	1								ŀ	행정·시설	14	13							1
	농업·녹지	3	2		1							전산·방송통신	1	1							
일	농업·수의	1			1						일	농업·녹지	3	2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1					4	ŀ	농업·수의	1			1					
반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반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세무·농업	4	2		0					2	ŀ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직	행정·세무·시설	3	2		0				1		직	행정·세무·농업	4	2		0					2
			1						1		-	행정·세무·시설	3	2						1	_
	행정·세무·전산 행정·전산·농업	1							1		-	행정·세무·전산	1	1						_	
	행정·전산·농업 행정·전산·시설	2	1						1	1	-	행정·전산·농업	3	2	\vdash					1	
	광정·선산·시설 공업·환경·보건		1				1			1		행정·전산·시설	2	1						-	1
	항집·완경·모건 행정·공업·시설	5	3			1	1			1	-	공업·환경·보건	1	<u> </u>	\vdash			1			_
			1		-1	1					-	행정·공업·시설	5	3	\vdash		1	<u> </u>			1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수의	3	1		1					1	-	행정·농업·녹지	3	1	\vdash	1	1			\dashv	1
		1				1				1	-	행정·농업·수의	1	<u> </u>		•				\dashv	1
	행정·농업·시설	4	-1			1				3	-	행정·농업·시설	4		\vdash		1			\dashv	3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2						1	-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보건·간호	4	1	3						1
	행정·시설·환경	1								1		행정·시설·환경		1	,						1
	행정·해양수산·보건	1		_						1	-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_	2			_				-				,						1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농업·녹지·환경 행정·보건·간호·의료	2	1	<u> </u>						1	-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4
	행정·보선·산호·의료 기술	1		1							-	행정·농업·녹지·환경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2	1	1						1
	사무운영	2							1	1	-	사무운영	2		1					1	1

	현				행							개		정		안					
				직속	기관	사	검소					N			지소	·기관	사업	<u>۸</u>			_
子甚	기관별		본청	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초	의 회 사 무 과	음	면	구분	기관별	합계	본청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윱	1
	7급 소계	182		19	7	3	5	5	9	53		7급 소계	182	82	19	7	3	5	4	9	
	행정	22	15			1		3	1	2		행정	22	15			1		3	1	
	세무 전산	2	2									세무	2	2							
	사회복지	8	2						1	5		전산	2	2							
	속기	2						2	1			사회복지	8	2						1	
	공업	3	2				1	_				속기	1						1		
	농업	1	-		1							공업	3	2				1			
	녹지	2	2		-							농업	1			1					
	해양수산	4	4					Н		\dashv		녹지	2	2							_
	시설	15	8				2		1	4		해양수산	4	4							_
	의료기술	4		4								시설	15	8				2		1	_
	보건	2		2				П		\neg		의료기술	4		2					-	
	보건진료	6		6								보건 보건진료	2								_
	환경	2	2									환경	6	2	6						_
	운전	11	2	2					2	5		운전	11	2	2					2	_
	행정·세무	5	3							2		행정·세무	5	3							_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 사회복지	5	4							_
	행정·공업	3	2		1							행정·공업	3	2		1					-
	행정·농업	17	4						2	11		행정·농업	18	<u>5</u>						2	1
	행정·시설	15	10			1				4		행정·시설	15	10			1				
일	행정·환경	1	1								01	행정·환경	1	1							_
_	행정·방송통신	1								1	일	행정·방송통신	1								
반	공업·환경	1	1								นใ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2			2						반	농업·농촌지도사	2			2					
직	농업·수의	2			2						71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직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농업	3	1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농업	3	2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	1							_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녹지	3	2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_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보건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시설	10	7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농업·환경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1								Ė			1				-
	행정·공업·시설					1				\dashv		행정·공업·시설	1				1				_
	행정·보건·환경	2							1	1		행정·보건·환경	2							1	
	보건·간호·의료기술· 식품위생	3		3								보건·간호·의료기술· 식품위생	3		3						_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통신운영	1							1			통신운영	1				•			1	
	사무운영	3					1	\vdash		2		사무운영	3					1			

	N	현			हें -										정						
				직속	기관	사	검소	의							직속.	기관	사	검소	의		
구분	기관별	합계	본청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체육 시설 사업 소	상하 수도 사업 소	의회사무과	유	면	구분	기관별	합계	본청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체육 시설 사업 소	상하 수도 사업 소	의희사무과	윺	면
	8급 소계	147	63	33	4	2		2	3	40		8급 소계	147	63	33	4	2		2	3	40
	행정	15	8					2		5		행정	15	8					2		5
	세무	1	1									세무	1	1							
	사회복지	6	2						1	3		사회복지	6	2						1	3
	방호	1			1							방호	1			1					
	공업	2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2	2									해양수산	2	2							
	보건	10		10								보건	10		10						
	간호	1		1								간호	1		1						
	의료기술	9		9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5		5								보건진료	5		5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환경 	1	1									환경	1	1							
	시설	9	5							4		시설	9	5							4
	시설관리	3	3									시설관리	3	3							
일	운전	7	1		1					5	일	운전	7	1		1					5
반	행정·세무 행정·사회복지·시설	4	4						1	_	반	행정·세무 행정·사회복지·시설	4	4						1	4
	행정·전산	7 3	3						1	4		행정·자외득시·시골	3	3						1	4
직	행정·농업	13	5		1					7	직	행정·농업	13	5		1					7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1					2		행정·해양수산·시설	<u>5</u>	<u>3</u>		1					2
	행정·시설	5	4			1						행정·시설	4	3			1				_
	전산·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4	4									농업·녹지	4	4							
	행정·보건·간호	4		4								행정·보건·간호	4		4						
	약무·보건	1		1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행정·공업·시설	5	4			1				
	보건·간호·의료	2		2								보건·간호·의료	2		2						
	사무운영	1	1									사무운영	1	1							

	현				헝	}							개		정		안				
				리속	기관	4	검소	_							리속	기관	*	日本	្ន		
72	리급병 기관병	함체	基礎	보건소	おいている。	제속지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의	4	면	구몬	리판동 기관동	함계	芒湖	보건소	安智力量利日	제육지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화	8	VI.
	9급 소계	78	36	2	2	1	14		1	22		9录 4.利	<u>84</u>	42	2	2	1	14	S - 11	1	22
	학경	ь		3-3	E-Va		1	83—V3		35—3°		93	8	2				1	- E		
	사회목지	17	7	23	8 8			3 - 3		10		사회목지	17	7					S - 1	- 33	10
	2 78	2	2	0 :	d di					(6.7)		육경	2	2					Q = 6	-33	
	동영	7					7					중업 <u>시설관리</u>	7	9—15				7	&	-35	
	গ্ৰহণ	1	1							100		朝安午世	1	1					S - 1	- 35	
	보건	*		85-2	2 3		4	-		85-8		基础	*	s—18				*	¢ - 6	-37	
	2 -8	э	1	3=3	5-75			63 - XS		2		2-25	3	1					s = 1	- 35	2
	행정·세 후	3	3	23	8 8		:	3-3		937		গুড় শাদ	3	3					s = 1		
	행정사회목지	6	2		d 4.		e.	÷ +	1	3		행정사회목지	б	2					s	1	3
	'গুস্ত ২৮ প্র	4	2							2		<u> 93.5%</u>	<u>3</u>	ı		8-8			X 3	-8	2
श्च	행정시시설	11	10	35-2	8 3	1	1	:- :		85 - S	E	<u>명점 시설</u>	13	12		8=8	1		bs - 13	-8	
£	공영·목지	1	1	3-3	5-6	351,		8-23		S)—3	윤	농영 독지	1	1		3 3			N 3	-8	
직	농영 수의	2	-	3=3	2		6	S-V		3=	직	농업 수의	2	3-3		2			b. 5	-8	
	建进心 政策	1		1	67 6-8		1	1: 8-		90.—9		보건 간호	1	5-8	1	8=8			bs - 13	-0	
	행정·세무·농업	1								1		গুস্-শাদ-ভেপ্ত	1	c - c		3 3			N-3	-0	1
	행정시세무시시설	1	ា	20 (<u> 93.89</u>	1	1		8 8			b. 3	-8	
	행정사회목지(농업	V 3		6 3			e .	5		9		행정세무시설	1	1		8=8			× - 6	-8	
		1	02	s=	5-X			63-25		1		행정사회목지능업	1	c - c		8=8			S-3	-8	1
	행정사당염사목지	3	1	: :	Ç-V			8 - V		2		গুন্ত ভা কেন	3	1		8 8			b.—9	-8	2
	행정(존경(시원	1		200	8 8			::		1		李祖、李祖、朴祖	2_	1		8=8			bs - 13	-8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C)		보건,의료기술,간호	1	:-0	1	8=8			b. 3	-8	
	전기운영	1 0	্য		9 3							전기운영	1	1		8 8			bs - 33	-8	
	기계운명	1		20 3	4 3		1	3 4		29 1		গ্ৰা এ প্ত	3	;_C		3-3		1	k = 3	-0	
	화중운영	1					1					화중운영	1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9호, 2013.12.4,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64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59조·제90조와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 한다.
 -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 자유구역청
 - 2. 시·군·구의 경우: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 본청 ·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 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 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69) 제 443 호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에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수 있다. <개정 2008.7.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5-919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하동군은 2015.10.30일 기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2015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5. 10. 30
- 제공받은자 : 고객만족도조사 조사원
- 제 공목적 : 민원행정서비스 항상을 위한 2015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법적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통계법 제33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민원 신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민원처리내용
-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2015년 하동군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
- 공고기간 : 2015. 10. 30 ~ 2015. 11. 8 (10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5. 10. 30

하 동 군 수